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관련 보호조치〉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34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관련 보호조치	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25.

다. 회 부 일 : 2026.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환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맞춤형추천(알고리즘) 기능으로 인해 청소년이 성인보다 취약한 자기통제·위험판단 특성상 과몰입이 수면·학습·정서 영역의 손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청소년이 실제로 마주하는 서비스의 설계·운영 방식(알고리즘 추천, 이용유도 기능 등)에 대한 최소 기준과 정보제공 책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보호자·학교의 부담은 확대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남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도·상담·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며,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하고,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맞춤형추천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정의함
(안 제2조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신설).

1) 정보통신망을 통해 2인 이상의 이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쌍방향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2) 알고리즘 기반의 제공을 개인맞춤형추천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5호).

3) 이용시간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이용유도 기능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6호).

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과도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및 제4호).

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제한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위험 경고 및 핵심정보를 고지하도록 함(안 제42조의4, 안 제42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 계정에 대하여 개인맞춤형 추천 및 이용유도 기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제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2) 청소년 이용자에 대하여 과의존 및 정신건강 위험에 관한 경고문
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 경고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42조의5제1항).

3) 청소년 계정에 적용되는 보호설정 및 개인맞춤형추천의 작동 개
요 및 차단 방법 등 핵심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고지하도
록 함(안 제42조의5제2항).

라. 위 법령에서 정하는 청소년 보호 책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제3호의2 및 제3호
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관련 보호조치(안 제44조의7제6호의5부터 제6호의9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사회관계망서비스’, ‘개인맞춤형추천’, ‘이용유도 기능’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 신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지도·상담·교육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제4호 신설).
-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연령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기능을 구축하고, 미성년자 계정에 대한 개인맞춤형추천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도록 하되, 친권자 등의 명시적 동의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이용자에게 과의존 및 정신건강 위험에 관한 경고를 제공하여야 하고, 청소년 계정에 적용되는 보호설정, 개인맞춤형추천의 작동 개요 및 차단 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함(안 제42조의5 신설).
- 친권자 등의 명시적 동의 확인 없이 개인맞춤형추천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공하거나 위험경고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3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u>14. “사회관계망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간 인적 관계의 형성·유지·확장 및 정보의 생성·공유·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서비스로서, 부호·문자·음성·영상·화상·동영상 등의 전자적 정보의 유통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u>
<u><신설></u>	<u>15. “개인맞춤형추천”이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선별·배열·추천하는 알고리즘 기반 제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u><신설></u>	<u>16. “이용유도 기능”이란 자동재생, 무한스크롤, 반복 알림 등 체류시간 또는 반복적 이용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자동화된 기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u>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생략) <신설>	<u>하는 것을 말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 ----- ----- -----한다)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부터 -----. 1. ~ 3. (현행과 같음) 4. <u>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4(청소년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제한) ① <u>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위하여 생년월일 입력 또는 본인확인 기능을 구축하여야 한다.</u> ② <u>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는</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u>미성년자 계정에 대하여 개인맞춤형추천 및 이용유도 기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친권자 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 시스템을 통하여 친권자 등의 명시적 동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제42조의5(청소년 보호를 위한 위험 경고 고지) ①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이용자에게 과의존 및 정신건강 위험에 관한 경고문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 경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u> <u>②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계정에 적용되는 보호설정, 개인맞춤형추천의 작동 개요 및 차단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u>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

현행	개정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u><신설></u> ④ (생략)	음) ③ ----- ----- -----. <u>3의2.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친권자 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된 내용과 다르게 청소년에게 개인맞춤형 추천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공한 자</u> <u>3의3.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협 경고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u>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 등에 따라 청소년의 대다수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0대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70.1%에 달하여 2022년 대비 8.0%p 감소함¹⁾.

1)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p.102

- 그런데 최근 알고리즘에 기반한 SNS가 과의존을 유발하는 등 청소년의 인지 및 정서 등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과 불안 등 정신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2배 높아짐²⁾.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청소년(만 10~19세)이 61.9%로 다른 세대(성인 37.5%, 아동 52.9%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³⁾.
- 2024년 1월 미국 연방 상원에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 착취’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는 SNS가 아동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도 하였음.
- 또한 유럽연합은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플랫폼이 아동의 행동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2024년 5월부터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이에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 관련 알고리즘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이 제정·추진 중인 상태임.

2) 한국일보, ‘미국 공중보건당국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치명적 위험”’, 2023.5.24.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65.

- 2024년 7월 미국 상원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비슷한 콘텐츠를 자동재생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 Kids Online Safety Act)’을 통과시켰음⁴⁾.
 - 또한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를 금지하고, 14세에서 15세 사이 아동의 경우 SNS에 가입하려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⁵⁾, 미국 뉴욕주는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⁶⁾하는 등 미국 23개 주에서 아동 SNS 제한 관련 법률이 통과됨.
 - 호주에서는 ‘소셜미디어 최소연령법’을 2024년 제정하여, 2025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 중임⁷⁾.
- 이러한 최근의 추세 및 세계적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기반 추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SNS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한국일보, “SNS, 유해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강력 규제법, 미 상원 통과는 했지만...’, 2024.8.1.

5) 연합뉴스, ‘美플로리다주, 내년부터 14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 2024.3.26.

6) 한국경제, “알고리즘 거부권 보장하라”...‘디지털 감옥’ 탈출구 찾는 지구촌’, 2024.8.4.

7) 조정훈 의원실_아동·청소년 SNS 규제추세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자료집

□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제14호부터 제16호)

- 개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 ‘개인맞춤형추천’, ‘이용유도 기능’ 등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개념들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다만, 각 정의 규정에 대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함.
- 먼저, 개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간 인적 관계의 형성·유지·확장 및 정보의 생성·공유·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서비스로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전자적 정보의 유통을 매개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정보통신망의 이용 자체가 정보의 송·수신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⁸⁾, 개정안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정보통신서비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수익적 성격의 규정에 비해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므로⁹⁾,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한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현재 1992. 2. 25. 89헌가104

- ‘개인맞춤형추천’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선별·배열·추천하는 알고리즘 기반 제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알고리즘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개인맞춤형추천’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므로 사실상 거의 모든 검색 엔진, 뉴스 피드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적용되는 등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이용유도 기능’은 “자동재생, 무한스크롤, 반복 알림 등 체류시간 또는 반복적 이용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자동화된 기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 되고 있는데, ”현저히 증가”는 불확정법개념으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인맞춤형추천”, “이용유도 기능”은 규제 대상이 될 특정 기능을 정의하고 있어 SNS 규제 도입 여부 및 도입 시 규제 방식에 대해서 SNS 서비스의 긍·부정적 측면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경우 개념이 광범위하여 일반 이메일, 카페, 블로그 등 이용도 규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산업통상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관련,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 자료(2025.11.14.)상 약속*을 감안하여, 美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의무 부과

대상 및 의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의무 부과를 지양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관련 법안은 美 업계·의회·행정부의 관심이 큰 사안으로, 통상 분쟁화되지 않도록 절차적 관리도 필요. 특히, 제정 과정에서 美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의견 수렴 등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함.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안 제41조제1항)

- 현행법 제41조¹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하여야 하는 시책의 내용에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임.

10)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41조제1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부터’라는 자구를 추가함으로써 안 제4호는 현행법 제41조제1항제3호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시책의 마련 및 지원 규정의 취지상 오히려 구체적으로 각호를 규정하기보다는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부 시책 마련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안 제41조제1항제4호 신설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청소년을 과도한 SNS 이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 시책 마련의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청소년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제한(안 제42조의4 신설)

- 개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령 확인을 위한 기능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계정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개인맞춤형추천 및 이용유도 기능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과도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및 중독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규율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청소년의 정확한 연령 기준이 규정되

어 있지 아니하고, 개정안은 특히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 소지가 있는 만큼, 침익적인 규제의 당사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연령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청소년에 대한 연령 기준이 없는 채로 미성년자와 청소년이라는 용어도 혼용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SNS 규제와 관련하여 그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둘째, SNS의 개인맞춤형추천의 해악성만을 강조하여 법률로써 그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 알고리즘은 콘텐츠 추천 과정에서 이용자의 선호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의 유사성, 다른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 빈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수 있고, 이 중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요소도 존재함.
- 따라서 알고리즘 또는 이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내용과 무관하게 개인맞춤형추천 일체가 이용자, 특히 미성년자에게 과의존 등 병적인 상태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알고리즘 기반 광고 및 콘텐츠 제공은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나 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하는 경우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자체의 유해성 여부 및 청소년에 대한 제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유해콘텐츠의 범위 확대 및 규제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 청소년의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개인맞춤형추천 및 이용유도 기능 등 제한의 해제를 위해서는 ‘친권자 등’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친권자 등을 별도로 정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친권자 등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동법 개정안이 다수¹¹⁾ 발의되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법안 심사 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연령확인 시 ‘생년월일 입력’의 실효성 및 ‘본인확인 기능’ 활용 가능 여부 관련 세부 논의가 필요하고, SNS 규제 도입 여부 및 규제 방식 관련하여 공·부정적 측면을 고려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위험경고 고지(안 제42조의5 신설)

- 개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과의

11) 의안번호 제2201798호, 제2201816호, 제2202630호, 제2202761호, 제2203983호, 제2217369호.

존 및 정신건강 위험 경고문구 등 위험 경고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중독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수범자인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이용자에게 위험 경고 고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연령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또한 별도로 위임하지도 않고 있어 수범자로서는 의무의 대상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42조의5제2항은 청소년 계정에 적용되는 보호설정, 개인맞춤형추천의 작동 개요 및 차단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맞춤형추천의 작동 개요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의 비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위험 경고 고지를 넘어 작동 개요까지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고문구 제공은 청소년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어 수용하나, 보호설정, 개인맞춤형추천의 작동 개요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SNS 이용 제한 규제 도입 여부 및 방식 관련 논의 이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28
